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

납부번호		
전자납부번호		
업체명		
사업자(또는 법인) 등록번호		
대표자		
부담금 내역	기본부담금	
	추가부담금	
	합계금액	
납부기한		
납부계좌		

「약사법」 제86조의2 및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위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

인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근거

① 기본부담금 (A) :

완제의약품 구분		전년도 품목별 생산액등	품목별 계수	부담금 요율	소계
(가)	일반의약품				
(나)	전문의약품 중 크림제, 연고제,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				
(다)	(나) 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				
합계(A)					

② 추가부담금 (B) :

대상의약품	
대상의약품의 전년도 피해구제급여 지급액	
추가부담금 요율	
합계(B)	

③ 납부액 총계 (A+B)

※ 유의사항

1. 위 부담금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합니다.
2. 위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위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
4. 문의처: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(전화: 02- -)
5.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및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